

『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2월 1일

제2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최 윤 구

나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(안 제2조)
-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-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(안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본 조례안은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(2004.3.5개정, 2004.9.6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미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,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, 장애인 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의 구성,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소집 및 의결 기준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• 본 조례안은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미시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,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복지시책을 마련하고,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의무규정에 따른 장애인 복지 지원 요구사항 등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